

교육성과관리센터 규정

제정 2017. 8. 28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 교육성과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제2조(조직과 기능) ① 교육성과관리센터(이하 “센터”)는 학칙 제1조 (목적)에 부합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전공·교양·융합·비교과 교육과정의 연구, 평가 및 환류 등 교육의 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.(개정 2018. 12. 12, 2020. 3. 16., 2022. 9. 6.)

② <삭제 2020. 3. 16.>

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(개정 2020. 3. 16., 2022. 9. 6.)

1. 본 대학교의 핵심역량, 교육단위부서의 전공역량 개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
2. 본 대학교의 교육 환류체계 관리
3. <삭제 2022. 9. 6.>
4. 호서교육인증제 연구, 계획수립 및 운영
5. <삭제 2020. 3. 16.>
6. <삭제 2020. 3. 16.>
7. <삭제 2020. 3. 16.>
8. <삭제 2022. 9. 6.>
9. <삭제 2022. 9. 6.>
10. <삭제 2022. 9. 6.>
11. <삭제 2022. 9. 6.>
12.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, 예·결산 보고
13. 센터 소관 위원회 운영
14. 호서서포터즈의 계획 수립 및 운영
15.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및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
16.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장은 센터 구성원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를 학기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이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.

제3조 삭제<2020. 3. 16.>

제4조 삭제<2020. 3. 16.>

제5조 삭제<2022. 9. 6.>

제5조의 2 (교육과정연구위원회) 본 대학교 전공·교양·융합·비교과 교육과정의 연구를 위하여 교육과정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20. 9. 8. 2021. 3. 1., 2022. 9. 6.)

1.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학생대표를 당연직으로 포함하여 10인 이상의 위원과 1인의 간사를 둔다.
2. 위촉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교무처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3. 전공·교양·융합·비교과 교육과정의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하여 각 교육과정별로 위원회 산하 분과를 둘 수 있다.
4.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기능을 고려하여 학기당 1회 이상으로 하며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[본조신설 2020. 3. 16.]

제6조(지원부서와 관계) ① 센터는 교육과정연구 및 교육성과관리를 위하여 교양·전공·융합·비교과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담당 부서에 연간 운영계획, 성과분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환류체계에 따른 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도록 요구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② 교양·전공·융합·비교과교육과정을 실행하는 담당 부서는 센터에서 정한 준칙에 맞게 센터의 요구사항에 응해야 한다.(개정 2020. 3. 16.)

제7조 삭제<2020. 3. 16.>

부 칙(2017. 8. 28)

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12. 12)

① (조직개편에 따른 개정) 조직개편에 따라 ‘교무처’을 ‘교육혁신처’로, ‘학사팀장’을 ‘교육혁신팀장’으로 한다.

부 칙(2020. 3. 16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9. 8.)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